

光州直轄市西區賃貸住宅建設에 대한區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2年 12月

總 務 委 員 會

###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1992 年 11 月 18 日
-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 다. 回附日字 : 1992 年 11 月 20 日
- 라. 最初上程日字 : 1992 年 12 月 14 日
-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 回 (92.12.14)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西區 總務局 稅務課長)

#### 가. 提案理由

-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코자함.

#### 나. 主要 骨 子

-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 내무부장관 허가 :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92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 시달) 내무부장관 허가를 얻었슴(근거 : 세제22670-11204 '92.11.21자)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丁浩文)

- 서구 관내 8개 임대주택에 5,46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92년도 재산세 6천 8백52만원과 증토세 5천7백42만6천원으로 연간 총 1억2천5백94만6천원이 됨
- 서구의 열악한 구세수입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임대 주택 건설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례안으로서
- 광주시에서도 동구, 북구, 광산구가 본 조례안에 의하여 '94.12.31까지 연장 의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 동일 직할시 내에서 형평과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答	辯
<p>○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임대 거주자의 혜택과 임대주택 건설업체에 감면해주는 지방세액은 얼마인가?</p>		<p>(答辯者: 稅務課長 尹大宇)</p> <p>○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므로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p> <p>○ 관내 8개 임대주택에 92년 재산세 6천8백52만원과 종토세 5천7백42만 6천원으로 연간 총 1억2천5백05만원의 세제 혜택을 줌</p>	

5. 討論要旨 :

6. 審査結果 :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슴

7. 其他事項 :

##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